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48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조지연 · 김은혜 · 김승수
이달희 · 김위상 · 조은희
임이자 · 김용태 · 김상훈
최보윤 · 서일준 · 김장겸
한지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

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처리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으로, “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중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2.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금지된 판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승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고·승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
 3. 제2호에 따른 삭제 관련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조치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중 “제37조”를 “제35조제4항, 제37조”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략)</p> <p>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u>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살생물처리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u>----- -----<u>다음 각 호</u>----- -----<u>중개</u>----- -----.</p> <p>1.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u></p> <p>2. 「<u>제품안전기본법</u>」 제9조의 4에 따른 <u>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u></p>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금지된 판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승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고·승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

3. 제2호에 따른 삭제 관련 정보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조치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통

<신 설>

신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생략)
<신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

-----제35조제4항,
제37조-----

-----.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하여 필요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u>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 ----- -----.</p> <p>제58조(벌칙)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제35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7. (현행과 같음)</p>
--	--